

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.

부산광역시장
2021년 7월 7일

부산광역시 조례 제6412호

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미래산업국 제2호란 및 제3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관한 다음 의 권한 가. 적합명령 나. 과태료의 부과·징수	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20조 같은 법 제52조	구청장·군수
3. 자가용전기설비의 적합명령	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20조	구청장·군수

별표 1 환경정책실 제10호거목부터 더목까지를 각각 너목부터 러목까지로 하고, 너목(종전의 거목)의 근거 및 적용법률란 중 “같은 법 제82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”를 “같은 법 제82조제1항제1호”로 하며,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거.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접수	같은 법 제39조제3항	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

별표 2 환경정책실 제10호거목부터 더목까지를 각각 너목부터 러목까지로 하고,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거.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접수	같은 법 제39조제3항	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 개정이유

위임 사무의 근거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대기배출업소 인허가 및 지도·점검 관련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청장·군수 및 부산·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관련 사무를 위임하려는 것임

◇ 주요내용

- 위임 근거법령 개정사항 반영·정비(별표 1)
 - 「전기안전관리법」제정에 따른 위임 근거법령 변경
- 신설되는 위임사무를 별표에 추가함(별표 1·별표 2)
 -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접수
:시장 → 구청장·군수,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